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18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김남근 · 김승원 · 김 윤
김현정 · 민병덕 · 박 정
박정현 · 박해철 · 박홍배
백승아 · 송재봉 · 신장식
양부남 · 이강일 · 이용우
이훈기 · 정을호 · 조인철
최혁진 · 한창민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과도한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절차로 인해 실질적 구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위해상품이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역시 집단소송이나 개별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데, 실제로 가슴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수많은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편입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상의 제재금이지만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위해상품·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의2(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의2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제107조의2(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설치)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란 이 법 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3(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과징금
2. 제4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사업자의 출연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하는 과징금 중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기금에 귀속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과징금 금액을 매 회계연

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89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사업자는 그 이행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연금은 반드시 동의의결 이행에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

제107조의4(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2.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3. 제107조의3제4항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사업자가 위탁한 사업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피해자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의5(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피해구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11장의2 불공정거래 피해구제</u> <u>기금</u> <u>제107조의2(불공정거래 피해구제</u> <u>기금의 설치) ① 공정거래위원</u> <u>장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u> <u>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u> <u>과 소비자(이하 “피해자”라 한</u> <u>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u> <u>하고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u> <u>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u> <u>·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u> <u>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이</u> <u>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u> <u>다.</u> <u>②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u> <u>등”이란 이 법 또는 다음 각</u> <u>호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u> <u>는 행위를 말한다.</u> <u>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u> <u>관한 법률」</u> <u>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u> <u>공정화에 관한 법률」</u> <u>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u>

<신 설>

한 법률」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3(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과징금

2. 제4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사업자의 출연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하는 과징금 중 100분의 20 이하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기금에 귀속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과징금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89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를결을 이행하는 사

<신 설>

업자는 그 이행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연금은 반드시 동의를결 이행에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

제107조의4(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2.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신 설>

· 홍보

3. 제107조의3제4항에 따라 동
의의결 이행사업자가 위탁한
사업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피해자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의5(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피해구제기금운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
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피해구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